제421회 임시회
’24. 10. 11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3. 제안이유

○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출연목적

– 지역 실정에 적합한 여성·가족 정책 연구,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·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

○ 출연 예정금액 : 1,616,466천원 (도비100%)

○ 출연내역 : 충북여성재단 운영비, 사업비

○ 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 : 천원)

구 분 (기준보조율)	2024년 출연금 (B)	2025년 출연계획 (C)	증감 (D=C-B)
도비(100%)	1,479,460	**1,616,466**	**137,006**

5. 검토의견

○ 법적근거

- 본 출연계획안은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음.

-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8조(재정지원 등)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 출연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출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

○ 종합의견

-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가 2017년 2월에 설립한 기관임.

- 지역맞춤형 연구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내 유일의 성평등 교육·연구의 거점기관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출연은 타당함.

- 2025년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은 전년도 출연금 대비 137,006천원 증액되었으며, 주요원인은 인건비 기본급 자연증가분을 비롯해 행정시스템 변경 추진에 따른 웹기안기 구매 등 일반운영비와 연금부담금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결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참고1 **충북여성재단 예산 현황**

□ 2025년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 (기준보조율)	2021년 (A)	2022년 (B)	2023년 (C)	2024년 (D)	**2025년 (E)**	증감 (F=E-D)
도비(100%)	1,317	1,444	1,404	1,479	**1,616**	137

□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

○ 인건비 : 총인건비 인상율 가이드라인 총인건비 인상률 등 자연증가분(3.9% 적용), 경영평가 성과급 증액

○ 경 비 : 일반운영비, 연금부담금 증액

○ 사업비 : 연구과제 수 증가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

□ 2025년 충북여성재단 사업예산(안)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금 액			산 출 내 역
	'24년	**'25년**	증감	
합 계	1,540	**1,678**	138	※ **출연금 1,616백만원** + 순세계잉여금 등 62백만원
운영재원	1,658	**1,671**	13	
인건비	950	**1,009**	59	- 재단 직원(15명) 보수 등 (기본급 및 수당, 퇴직급여, 성과급 등)
경 비	224	**269**	45	- 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수선유지비, 자산취득비 등
사업비	360	**393**	33	- 교육운영, 정책연구,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등
예비비	7	**7**	-	

※ 수탁기관(성별영향평가센터·여성긴급전화1366센터) 사업비 별도

참고2 관련근거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 5. 28.>

제6조(출자·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□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
제3조(재산 및 운영경비)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의 출연금

2. 개인·기관·단체 등의 출연금
3. 제9조에 따른 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여성·가족·다문화·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·개발 사업
2.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3. 양성평등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
4.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
5. 여성인권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업
6.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
7.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·협력 사업
8. 여성·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

9.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재정지원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**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**할 수 있다.